

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[2003. 12. 15 규칙 제38호]

개정 2007. 12. 21 규칙 제132호

개정 2017. 3. 31 규칙 제312호

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18. 12. 28 규칙 제351호
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
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」 제27조에 명시된 환경보전시책의 결정, 집행,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의제(Agenda21)를 근거로 21세기를 대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증평군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할 민간구심체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“지속가능발전”이란 군민, 기업, 행정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3조(기능)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1. 지속가능발전 행동원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민, 기업, 행정기관, 사회단체 등의 참여 유도
2.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 및 군정반영 건의
3. 각종 오염 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군민운동 전개
4.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
5.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누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31, 2018. 12. 28>

1. 당연직 위원: 환경위생과장

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

2. 위촉직 위원 : 군민, 기업체 임직원, 민간단체 회원, 전문가 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4조의2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31]

제4조의3(위촉·해촉) ① 협의회 위원은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위원이 품위손상·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[본조신설 2017. 3. 31]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7. 3. 31, 2019. 12. 26>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31>

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, 회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8조(공청회 등 개최)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9조(수당 등)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·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31>

제10조(운영규칙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7. 3. 31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(2007. 12. 21 규칙 제13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3. 31 규칙 제31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증평균 「아름다운 증평21」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“증평균 「아름다운 증평21」 추진위원회”는 이 규칙에 따른 “증평균 지속가능발전협의회”로 본다.

부칙(2018. 12. 28 규칙 제351호, 증평균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균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